

# 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3,867,455	13,016,024
일반회계	428,606,092	12,858,183
특별회계	5,261,363	157,841
기타특별회계	5,261,363	157,841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282,036	68,461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966,138	28,984
주택사업특별회계	80,923	2,4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85,417	29,563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711,849	21,355

제 2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,21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14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채무관리 계획은 별첨 "채무관리계획"과 같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